

2007. 3.

條例案件審查報告書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產業建設委員會

조례안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9회)	2006. 10. 10	2006. 10. 11	2006. 10. 11	심사보류	건축과장
(112회)			2007 2. 2	심사보류	
(113회)			2007 3. 7	2007. 3. 7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 2. 28	2007. 2. 28	2007. 3. 7	2007. 3. 7	상수도 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고 이용하는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 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요금체계를 현실화하여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건실화를 도모

3. 주요내용

가.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인원수 등 변경 (안 제3조)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안 제5조의3)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규정 (안 제5조의 3)
- 일정규모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실태 점검 (안 제10조의 2)
- 대지안의 공지기준 설정 (안 제17조의 2)

나.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수도 요금의 인상 (별지)
- 상수도 부과업종의 축소 (별지 : 6종 → 5종)
-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 누진체계 개선
(별지 : 6단계 → 3단계)
-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요금감면 추진
(안 제40조 제1항 제6호)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려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분야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정함
-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령에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함
- 건축물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이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였지만 전용공업지역 등과 같은 계획된용지에 입지하는 공장건축물은 예치금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
- 상가와 주택의 복합형태인 집합건물에 대해서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 안 제17조의 2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으로써 건축물과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1999년 2월 8일 폐지되었다가, 건축법이 개정공포 (법률 제7696호) 됨으로써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되는 규정

-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중 동물관련시설에 대한 규정은 건축주의 입장이 우선인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해야 할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임
- 안 제20조 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으로서 일조권 적용을 위한 일조시간, 방향 등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삭제
- 안 제20조 제3항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일조권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를 정하고 있지만,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 는 건축물의 미관을 위하여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두 지않아도 되나 아파트는 이 규정에서 제외 함
- 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정은 건축법제69조의 2에 의거 규정된 내용으로써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함
- 제24조에서 규정하였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은 건축법제7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종전 시·군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하였던 것을 광역시·도에 두고 시·군의 건축관련분쟁을 다루도록 개정되어 본 조항을 삭제

나.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제109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과도한 요금인상을 이유로 부결되었던 조례임
- 본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은 2004년 제92회 임시회에서 평균 5.6%의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였고 작년 109회에 15.04%를 인상하여 2005년 상수도요금 생산원가 700원을 맞추고자 하였음
- 현재의 상수도 요금은 609원으로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원가의 85% 정도이며 금번 요금인상은 평균단가 658원으로 2005년도 수도요금 생산원가의 94%가 될 것으로 예상
- 내용을 보면 6개의 업종 중 욕탕2종을 삭제하여 욕탕2종의 요금을 적용받던 관광호텔이 영업용으로 포함되고 욕탕1종을 대중탕용으로 변경
- (별표2)의 가정용 수도요금부과 누진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바꾸고, 저소득주민의 생계지원 의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3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
- 조례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도요금의 8% 정도의 요금인상이지만 부과업종별로 보면 영업용 인상율이 5.1%로 낮은 편이고 대중탕용이 14.1%로 높은 편이며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가정용 상수도는 9.7% 정도의 요금인상이 될 것임

- 우리시 관내의 관광호텔은 후렌드리, 상록, 조선, 파크호텔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유탕2종 요금에서 영업용으로 바뀌면 수도요금이 평균 3%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 대중탕은 요금 인상폭이 조금 큼
- 지금까지 가정용과 공업용요금은 서민경제와 물가를 감안하여 저렴한 요금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업무용과 영업용은 높은 물값을 유지
이렇게 물값에 차등을 두는 것은 생산원가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입장에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업종간 형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
- 이에따라 행정자치부(불임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 참조)에서도 요금업종을 단일화하고 요금폭도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는 바 대중탕의 요금 인상폭이 크고 읍면지역의 인상폭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그동안 우리시의 상수도요금은 17차례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요금현실화를 추진하여 왔음
충북도의 각 시·군에서는 2005년과 2006년을 통하여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였으며 우리시와 같이 작년 하반기 인상요금을 추진하던 제천시의 경우에는 25% 요금인상을 추진하여 심사보류된 상태로 15%인상안으로 추진 중
- 우리시의 경우는 2005년도에만 14억 정도의 적자가 생겼고 상수도특별회계 채무액은 80억을 넘고 있음

- 상수도요금은 수도공급을 위한 재투자 재원이 되고 있지만 읍·면지역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은 상수원 오염이 심해져 지속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요청하고 있고 노후관 개량이 라든지, 신규로 발생하는 급·배수관 설치사업 수요가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이 되고 있음
- 금번 상수도요금 인상안은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임

5.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질의 : 없음

나.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질의 : 수도 기본요금 800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변 : 배관을 설치하면서 수익자 부담의 성격임

- ▶ 질의 : 가구당 평균 수도사용량은

- 답변 : 17톤

6. 심사결과

- 가.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나.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붙임 :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17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 3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은 1.5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 3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은 1.5 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 다중이용건축물	- 3미터 이상
• 공동주택	- 아파트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3미터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이상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3미터 이상
• 동물관련시설	- 5미터 이상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5미터 이상
• 묘지관련시설	- 5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1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 3미터이상 (준공업지역 2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3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중이용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4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가구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위 외 기타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미터 이상 - 2미터 이상 - 5미터 이상 - 5미터 이상 - 5미터 이상 - 0.5미터 이상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별표2]</p> <p>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대상 건축물</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건축기준 의 범위</th></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p>*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p> </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은 1.5미터 이상) </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p>*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p> </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은 1.5 미터 이상) </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건축물 </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3미터이상 - 다세대주택 2미터이상 </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 5미터 이상 - 5미터 이상 - 5미터 이상 </td></tr> </tbody> </table>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p>*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은 1.5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p>*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은 1.5 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3미터이상 - 다세대주택 2미터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 5미터 이상 - 5미터 이상 - 5미터 이상 	<p>[별표2]</p> <p>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대상 건축물</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건축기준 의 범위</th></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p>*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p> </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p>*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p> </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건축물 </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td></tr> <tr> <td></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td></tr> <tr> <td></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세대주택 1미터이상 </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 (") - (") - (") </td></tr> </tbody> </table>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p>*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p>*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세대주택 1미터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 (") - (") - (")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p>*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은 1.5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p>*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은 1.5 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3미터이상 - 다세대주택 2미터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 5미터 이상 - 5미터 이상 - 5미터 이상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p>*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p>*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세대주택 1미터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 (") - (") - (") 																																

개정안	수정안																																																				
<p>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 건축물</th><th>건축기준 의 범위</th></tr> </thead> <tbody> <tr> <td>•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td><td>- 1미터 이상</td></tr> <tr> <td>•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td><td>4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3미터 이상]</td></tr> <tr> <td>*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td><td></td></tr> <tr> <td>•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td><td>- 3미터 이상</td></tr> <tr> <td>• 다중이용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td><td>- 4미터 이상</td></tr> <tr> <td>•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td><td>- 아파트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td></tr> <tr> <td>• 다가구주택</td><td>- 1미터 이상 [3층 이상 규모의 경우 개구부 방향 2미터 이상]</td></tr> <tr> <td>•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td><td>- 2미터 이상</td></tr> <tr> <td>• 동물관련시설</td><td>- 5미터 이상</td></tr> <tr> <td>•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td><td>- 5미터 이상</td></tr> <tr> <td>• 묘지관련시설</td><td>- 5미터 이상</td></tr> <tr> <td>• 위 외 기타 건축물</td><td>- 0.5미터 이상</td></tr> </tbody> </table>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의 범위	•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1미터 이상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4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3미터 이상]	*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3미터 이상	• 다중이용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4미터 이상	•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 다가구주택	- 1미터 이상 [3층 이상 규모의 경우 개구부 방향 2미터 이상]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2미터 이상	• 동물관련시설	- 5미터 이상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5미터 이상	• 묘지관련시설	- 5미터 이상	• 위 외 기타 건축물	- 0.5미터 이상	<p>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 건축물</th><th>건축기준 의 범위</th></tr> </thead> <tbody> <tr> <td>•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td><td>- (개정안과 같음)</td></tr> <tr> <td>•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td><td>3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2미터 이상]</td></tr> <tr> <td>*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td><td></td></tr> <tr> <td>•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td><td>- (개정안과 같음)</td></tr> <tr> <td>• 다중이용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td><td>- (개정안과 같음)</td></tr> <tr> <td>•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td><td>- (개정안과 같음) - (") 【다세대주택 10미터 이상】</td></tr> <tr> <td>• 다가구주택</td><td>- (개정안과 같음) [삭제]</td></tr> <tr> <td>•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td><td>- (개정안과 같음)</td></tr> <tr> <td>• 동물관련시설</td><td>- (")</td></tr> <tr> <td>•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td><td>- (")</td></tr> <tr> <td>• 묘지관련시설</td><td>- (")</td></tr> <tr> <td>• 위 외 기타 건축물</td><td>- (")</td></tr> </tbody> </table>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의 범위	•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개정안과 같음)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3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2미터 이상]	*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개정안과 같음)	• 다중이용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개정안과 같음)	•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개정안과 같음) - (") 【다세대주택 10미터 이상】	• 다가구주택	- (개정안과 같음) [삭제]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개정안과 같음)	• 동물관련시설	- (")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	• 묘지관련시설	- (")	• 위 외 기타 건축물	- (")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의 범위																																																				
•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1미터 이상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4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3미터 이상]																																																				
*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3미터 이상																																																				
• 다중이용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4미터 이상																																																				
•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 다가구주택	- 1미터 이상 [3층 이상 규모의 경우 개구부 방향 2미터 이상]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2미터 이상																																																				
• 동물관련시설	- 5미터 이상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5미터 이상																																																				
• 묘지관련시설	- 5미터 이상																																																				
• 위 외 기타 건축물	- 0.5미터 이상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의 범위																																																				
•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개정안과 같음)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3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2미터 이상]																																																				
*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개정안과 같음)																																																				
• 다중이용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개정안과 같음)																																																				
•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개정안과 같음) - (") 【다세대주택 10미터 이상】																																																				
• 다가구주택	- (개정안과 같음) [삭제]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개정안과 같음)																																																				
• 동물관련시설	- (")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																																																				
• 묘지관련시설	- (")																																																				
• 위 외 기타 건축물	- (")																																																				